

부산광역시사하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 8. 28 ————— 사하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7. 9. 1

다. 상정일자 : 제6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97. 9.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황인호 민원봉사과장)

가. 제안이유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있는 민원실 전용 중계민원 구청장 직인에 대하여 그동안 관수자와 관리요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 민원전용 동장 직인과 같은 요령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공인조각, 비치, 관리 행정기관의 명칭을 지방자치법 규정에 맞게 개정
-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에 따른 기구명칭 조정
(시민과장 ⇒ 민원봉사과장)
- 동 사무장 유고시 공인관수자 지정 및 관수자와 사용자간 인계 인수 대상 공인을 민원전용 동장직인에서 민원실전용 중계민원 구청장 직원을 추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10조, 제13조의 내용중 소속 행정기관, 동 및 기관장의 보좌, 보조기관 등으로 하는 것은 그동안 조례 규정의 행정기관 해석에 혼선을 빚어오던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6장 제2절, 제3절, 제4절에 규정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내용과 맞게 조례조항을 개정한 것이며,
-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의 시민과장은 민원봉사과장으로 하는 내용과 안 제13조 제1항의 “실.과장, 사업소의 주무계장”을 “담당관. 과장, 소속 행정기관은 선임계장(합의제 행정기관은 소관담당관, 과장)”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96. 1. 1과 96. 12. 16에 개정한 내용에 따라 조정하고, 보건소와 인사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의 공인에 대한 규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한 사항이며
- 안 제13조 제2항과 제3항을 민원인 전용동장직인을 민원실 전용 중계 민원 구청장직인 및 민원전용동장직인으로 하는 것은 공인사용과 관수에 철저를 기하고 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개정이 필요하고, 내용이 관련 법령에 합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시행토록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의결